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30 July 2020

Original: English

제 75 차 회기
잠정적 의제 72 (c)*
인권 증진 및 보호: 인권 상황 및 특별 절차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사무총장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 74/166 에 의거하여 제출된다. 2019 년 9 월부터 2020 년 7 월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상황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개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유엔 간 인권 관련 협력 내용도 기술한다.

* A/75/150.



목차

	쪽
I. 서문.....	3
II. 정치 상황.....	3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개괄.....	4
A. 구금 시설 내 인권 침해	4
B.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C.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D. 식량, 물 및 위생에 대한 권리.....	8
E. 보건권.....	10
F. 노동권.....	11
G. 국제 납치 및 가족 분리.....	11
IV. 해당국 내 인권 상황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유엔 간 협력.....	12
A. 유엔 정부간 국제기구 및 인권 조약체와의 협력.....	12
B.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	13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관과의 협력	14
V. 결론.....	14
VI. 권고.....	15

I. 서문

1.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총회(이하 “총회”) 결의 74/166에 의거하여 제출된다. 유엔 사무총장이 2019년 9월 제 74차 회기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해당국 내 인권 상황을 살핀다(A/74/268 참조).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상황 등을 포함하여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 관련 상황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2. 본 보고서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해당국 정부가 유엔과 협력한 내용을 개괄한다. 또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도 언급한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에 해당되는 2019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 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참여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접근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독립적인 정보를 구하거나 제공받는 데 심각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최신 정보를 얻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다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이하 “이탈자”) 개인뿐 아니라 해당국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관 및 여타 단체와 신뢰할만한 2차 정보원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심각한 인권 침해 양상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4. 사무총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인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해당국 정부와 국제공동체에 권고를 제시한다.

II. 정치 상황

5.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남북 관계는 눈에 띄게 악화됐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1 부부장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2020년 3월 3일 대한민국 청와대를 규탄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앞서 3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기 훈련을 비난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여정은 6월 4일 비무장지대 기준 북측으로 전단지 등을 담아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가리키며 대한민국 내 기반을 둔 탈북자 단체 활동을 중단시키도록 대한민국에 촉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6월 9일 남북 간 통신 수단을 모두 단절했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0년 3월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한민국은 3월 29일 미사일 발사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즉각 군사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3월 5일과 31일 미사일 발사 건을 논의했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는 2월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상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아울러 제재 조치가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도록 촉구했다.¹ 특별보고관은 6월 9일 보도문을 통해 제재 조치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당국과

¹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전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공동체 간 협력 필요성 강조”(2020년 2월 26일).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엔 전문가, 기아 위기를 방지하도록 경제 제재 조치 해제 필요”(2020년 3월 31일).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인권 전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상황에서 모든 제재 조치를 해제하여 생명을 구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2020년 4월 3일).

국제공동체에 관련 권고를 제시했다.²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월 24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을 겪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산업별 제재 조치를 하루빨리 재검토하여, 이러한 제재 조치가 보건 부문 및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³ 안보리 결의 1718(2006)에 의거하여 발족된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제재 조치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했다.⁴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개괄

A. 구금 시설 내 인권 침해

8.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구금됐던 이탈자와 면담을 지속했다.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 접근이 불가능한 점이 여전히 면담 시 제기된 혐의를 확인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 대상자 진술 자체의 연결성과 서로 다른 진술과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등 진술 전수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평가한다.

9.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진술 덕분에 구금 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의 일관된 양상을 드러내는 정보를 한층 더 축적할 수 있었다. 량강도 혜산시와 포천군, 평안남도 개천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에 위치한 구금 시설 관련 정보를 상당량 수집했다.

10.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이하 “인권이사회”) 제 43차 회기 구두 보고를 통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모니터링에 따르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포함한 구금 시설 내 제도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의 직접적인 권한 하에서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가보위성 및 인민보안성보다 상급 당국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인권최고대표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반인도범죄에 준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국가 공무원 개인에게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11. 2020년 6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여섯 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되어 있다. 이들의 건강 상태나 구금 환경이 어떤지, 또는 영사 접근이 허용되는 지 등 관련 정보가 없다.

1. 구금 시설 내 여성

12.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년 7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⁶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하고 이후 송환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만연하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00명 이상 여성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를

²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도 자료”(2020년 6월 9일).

³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미첼 바첼레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전세계적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 완화 필요 촉구”(2020년 3월 24일).

⁴ 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exemptions-measures/humanitarian-exemption-requests 참조.

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구금 시설 내 인권 침해 건과 관련하여 앞서 유엔 총회에 제출했던 사무총장 보고서(A/74/268, 문단 7-18) 내용은 아직 유효하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해당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⁶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여전히 고통스럽다...”*(2020).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체포 및 구금된 여성이 경험하는 성별에 따른 특정 인권 침해 사례를 다뤘다. 특히 (나체 수색이나 과도한 신체 수색을 포함한) 성폭력과 여타 젠더에 따른 신체 및 언어 폭력,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생 필요(needs)를 해결할 시설 및 물품 접근 불가, 젠더에 따른 보건 서비스 미제공, 성 및 재생산 권리 침해 등이 두드러진다. 다른 종류의 인권 침해도 여성에게만 미치는 신체 및 정신적 영향이 있는데, 가령 식량권을 보장하지 않아 생리 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영양실조는 임신부 및 수유부(와 그 자녀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다.

2. 정치범 수용소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존재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며,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 수를 확인할 수 없다.⁷

14.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되는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형을 선고받는지 여전히 비밀에 부쳐진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은 용의자가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는지, 혹은 대한민국 국적자나 기독교 집단과 접촉하는 등 국가 기반을 해칠만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재판없이 국가보위성 검찰국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유죄를 결정하고 형을 내린다.⁸ 개인이 “일반 범죄”를 저질렀다고 국가보위성이 판단한 경우라면, 용의자는 인민보안성으로 이관되어 형사 절차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는다.

15. 대한민국을 목적지로 자국을 이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거나⁹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대한민국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거나 선교사와 만난 이 또는 정부의 눈 밖에 난 엘리트 등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이 있다.

16.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는 여타 구금 시설 내 수감자와 같은 종류의 인권 침해에 노출된다. 강제 노동을 통한 착취, 신체 및 정신적 폭력과 학대, 충분하지 않은 영양 섭취, 위생 및 보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치범 수용소가 사법부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수감자 가족은 수감자 소재를 알지 못하는 등 비밀리에 운영되는 성격 때문에 강제 실종에 처할 위험도 있다.

B.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18, 19, 21 및 22 조에 따라 국제법 상 법적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 사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정도가 개선됐다는 증거는 없었다.¹⁰

⁷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동안 비정부단체 엔케이워치 추산에 따르면 정치범 13 만 5000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8 만 명에서 12 만 명 사이의 정치범이 정치범 수용소 다섯 곳에 수감되어 있다(통일연구원, 2019 북한인권백서, 451-452 쪽).

⁸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28 쪽 문단 76 및 69 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49-151 쪽 참조.

⁹ 2020 년 1 분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여성 96 명과 남성 39 명 포함) 총 135 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전년도 동기간에는 229 명이 입국했다.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참조(2020 년 4 월 10 일 자료 기준).

¹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이 기록한 상황과 비교하여

18. 정부는 여전히 정보를 독점하며¹¹ 조직적으로 사회 생활을 전면 통제한다(A/HRC/25/CRP.1 참조). 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인민반 등의 단체를 통하여 광범위한 감시 체도를 운영한다. 인민반은 20 가구 내지 40 가구를 묶어서 운영되며 감시의 도구라는 진술을 이탈자로부터 일관되게 접했다. 인민반에서 이웃을 감시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독려한다. 인민반장이나 109 상무 등의 단체는¹² 사전 공지나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할 수도 있다. 이탈자는 가까운 혈육 관계에서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19. 국가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국경을 일이나 무역 등을 목적으로 드나드는 사람을 통해 국외발 정보가 지속적으로 국내로 전해진다. 또한 민간 시장에서 새로운 정보 기술을 접할 기회가 늘었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한편 국가 감시 방식도 다양해졌다. 가령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사람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나,¹³ 북중 간 국경 감시를 더 용이하게 하거나¹⁴ 외국 방송 신호를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내 웹사이트나 이메일만 접근할 수 있고 범세계적인 통신망 접근을 차단한 인터넷을 운영한다.

20. 형법 조항은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을만한 어떤 발언이나 행위를 범죄화하여 가혹한 형을 내릴 수 있도록 상당히 모호하게 쓰여있다. 가령 제 60조는 반국가목적의 시위를 범죄화하고, 제 62조는 “반국가적으로 선전, 선동 행위”를 범죄화하며 제 68 조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행위를 범죄화한다. 이러한 형법 조항 상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¹⁵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팽배하여, 국가나 국가 정책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을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문화를 더욱 부채질한다.

C.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21.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외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됐다. 국민은 국내외 여행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실상 이동이 금지된다. (A/73/308 문단 23-24 참조)

22. 허가없이 해외에 나갔다 송환된 이들을 처벌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수차례 중국 및 대한민국 정부에 서신을 보냈다.

전반적으로 개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다(A/HRC/25/CRP.1, 문단 259).

¹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 차원에서 통신, 우편 및 방송을 모두 소유 및 통제하며, 선전선동부가 모든 정보를 검열한다. 독립적인 언론, 출판 또는 예술 공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¹² 109 상무는 2004년 발족된 검열 단체로 여러 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 언론, 출판물, 라디오 및 DVD 검열을 지원한다. “109”는 해외 언론 출판물을 규제하도록 명령한 날짜(10월 9일)를 따온 것이다. 선전선동부,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관계자를 파견하여 109 상무를 구성한다.

¹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2008년 국내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했고, 현재 휴대전화 약 500만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휴대전화 통신망은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콕과 합작 투자로 운영된다.

¹⁴ Martyn Williams, *Digital Trenches: North Korea's Information Counter-Offensive* (워싱턴 D.C., 북한인권위원회, 2019), 11, 16, 35-37 쪽.

¹⁵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6조 참조.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 36호(2018)에서 생명권(CCPR/C/GC/36)을 다루며, 국내법 승인 하에 생명 박탈이 이뤄지더라도 자의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의적”이라는 개념은 부적절성, 부당함, 예측 불가능성, 적법절차 부재의 요소를 포함할 뿐 아니라, 합당성, 필요성, 비례성 요소도 포함하기 때문이다(문단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탈자가 송환될 경우 어떠한 우려가 있는지 상세히 명시했고, 또한 국제법 상 각 국가의 의무를 개괄했다.¹⁶

23. 대한민국은 2019년 11월 7일 어부로 알려진 두 명을 동료 선원 16 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했다. 특별보고관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채 해당 결정을 내렸고, 송환된 두 명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및 학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A/HRC/43/58, 문단 19 참조).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2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에서 공동으로 보낸 서신에¹⁷ “극악한” 범죄자이며, 대한민국으로 탈북하겠다는 의도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두 명을 추방했다고 답했다.¹⁸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적 및 물적 이동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1월 말 국내외 이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도시 및 지역 간 이동도 제한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취했다.¹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입하는 민간 항공기는 2월 이후로 전수 중단됐고, 2월 초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중국 및 러시아로 향하는 기차도 중단됐다. 2월 중순경부터 중국 및 러시아로 가는 해상 및 육상 경로도 대부분 차단됐다.²⁰ 당국은 6월 24일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D. 식량, 물 및 위생에 대한 권리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 1조 2항에 따라 최소 수준의 식량, 물, 위생 접근성을 차별없이 보장하는 등 해당 규약에 따른 핵심 의무를 다하도록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활용할 의무가 있다.²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러한 국가적 의무를 다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관에 따르면 1040 만명이 영양 지원과 보건의료, 깨끗한 물, 위생 및 청결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인구 40 퍼센트에 해당하는 1010 만명은 식량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며, 식량 지원이 당장 필요한 상태이다.²² 2019년

¹⁶ 답변 포함 서신 교환 기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pcommreports.ohchr.org/Tmsearch/TMDocuments>.

¹⁷ 공동 서신 기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4975>.

¹⁸ 대한민국 측 답변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File?gId=35189>.

¹⁹ 학교 개학은 연기되고, 행사와 회의는 모두 중단됐다.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발족시켜 대응하고 있다(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news/dprk/2020/dprk-200130-kcna01.htm 참조).

²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월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가 마련될 때까지 국경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남포에서 3월 11일 컨테이너 반출입이 재개됐다고 알려지며, 5월 중순까지 남포와 다렌을 잇는 해상 항로로 배편이 정기적으로 오고 갔다는 보고가 있다.

²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1년 9월 14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당사국이 됐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 11조 및 제 12조 참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권리 위원회가 당사국 의무의 성질을 설명한 일반논평 제 3호(1990)(E/1991/23-E/C.12/1990/8, annex III, 문단 10),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설명한 일반논평 제 14호(2000)(E/C.12/2000/4, 문단 43-49) 참조.

²² 인도지원조정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필요와 우선순위 2020*(2020), 5, 14, 22, 23, 36,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7.7 점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분류된다. 2019 년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 년에서 2018 년 사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인구 47.8%가 영양 부족을 겪었는데, 이는 약 1220 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렸다는 의미이다.

27. 아동, 임신부, 수유부, 노인,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 거주자는 식량권 침해에 가장 취약하다. 식량 부족 상황에 처했을 때 식사를 건너 뛰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등 건강에 해로운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흔하다. 6 개월에서 23 개월 사이 아동 3 분의 1 은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식품 섭취 다양성이 갖춰지지 않거나 최소한의 식사 횟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최소한의 수용가능한 식사(minimum acceptable diet)를 하지 못한다.

28. 지난 20 여 년 간 저체중, 발육 부진, 체력 저하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5 세 미만 아동 10 명 가운데 한 명은 저체중이며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만성 영양실조로 인해) 발육 부진을 겪고 신체 성장 및 인지기 향상에 한계를 겪을 수 있다.²³ 하위 20 퍼센트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 27 퍼센트는 발육 부진을 겪는데, 이는 상위 40 퍼센트 부유층에 속하는 아동 14 퍼센트가 발육 부진을 겪는 것과 비교된다. 지역 간 발육 부진 비율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데, 평양의 경우 10 퍼센트이며 량강도는 32 퍼센트를 기록한다. 한 살 이상 아동 가운데 발육 부진을 겪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모유 수유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양 공급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위 20 퍼센트 빈곤층에 속하는 48 개월부터 59 개월 사이 아동의 41 퍼센트가 발육 부진 상태이다.

29. 만성 및 급성 영양실조는 또한 안전하지 않은 식수, 열악한 위생 및 청결 상태, 필수 의약품 부족과도 연관된다. 전체 인구의 33 퍼센트에 해당하는 840 만 명은 안전하게 관리되는 수원(水源) 접근이 불가능하며, 지방은 그 비율이 50 퍼센트에 달한다.²⁴ 다섯 명 중 한 명은 기본 위생 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²⁵ 따라서 전체 인구 상당수가 설사 등 수인성 질병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해당국 내 아동 사망률 및 영양부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다.²⁶ 안전한 물 접근 정도가 떨어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를 막기 위해 당국이 제시한 청결 지침을 준수하기도 어렵다.²⁷

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치는 식량권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여, 만성적 식량 안보 위협과 영양부족을 심화시킨다.²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 농업 중심 경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해 작물을 심지 못하거나 국내 이동이 불가하거나 종자나 식량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은 식량 안보 위협을 더욱 가중시킨다. 더하여 인적 및 물적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수 개월동안 무역 및 교류가 거의 멈췄고, 물품 수입이 지연되며, 사람과 화물 격리 기간이 길어졌다.

38 쪽 참조. 식량 안보는 2019 년 4 월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공동으로 실시한 식량 안보 평가 당시 수집된 가계별 식량 소비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계산했다.

따라서 2019 년 보고됐던 수치(1090 만명)보다 적은 수가 반영됐다.

²³ 유엔아동기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 및 여성이 처한 상황 분석 2019*(평양, 2019), 54 쪽.

²⁴ 인도지원조정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필요와 우선순위*, 44 쪽

²⁵ 상동, 14 쪽.

²⁶ 상동, 47 쪽.

²⁷ 푸용 DPRK Daily, “조선중앙통신 TV: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책(영어 자막)”, 2020 년 2 월 26 일 조선중앙통신 방송 www.youtube.com/watch?v=iZA-H63ScfY.

²⁸ 세계식량계획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또한 식량 안보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만성 식량 불안정 국가라고 평가했다(세계식량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세계 최빈곤층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의 경제 및 식량 안보 측면의 여파 분석”, 2020 년 4 월, 13 쪽).

2020년 3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전년도 3월에 비해 거의 91 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⁹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외 인적 및 물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국가배급제도가 실패한 데 대응하여 민간 상행위를 영위하는 등 주민이 식량권을 실현하고자 나름의 대응 전략을 취하는 일조차 어려워졌다.³⁰ 최근 이탈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기 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활했던 이탈자의 거의 절반 가량은 조사에서 ‘사부문’에서 생계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³¹ 또한 다른 응답자에 따르면 일반 시민은 오늘날 약 3분의 2 가량의 수입을 장마당을 통해서 벌어들인다고도 답했다. 장마당은 합법은 아니지만 용인되는 시장 형태이다.³²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제한 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민은 이동의 자유 제한, 자의적 체포 및 구금 등 여러 인권 침해에 취약했다.³³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상행위 기회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최고대표는 5월 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신을 보내, 빈곤층이 필수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상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치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식량 안보 위협과 영양실조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경 봉쇄와 엄격한 격리 조치가 이행되면서, 유엔 관계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주재했던 유엔 관계자는 2020년 6월 기준 기존 인원의 25 퍼센트도 채 남아있지 않다. 더하여 2020년 6월 이래로 평양의 지역 현장 방문이 불허되어,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식량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 임신부, 수유부, 아동 및 결핵 환자나 병원 내 소아병동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상당히 제한적인 지원만 전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매일 미량영양소 강화 곡물이나 비스킷을 받을 수 없는 약 56만명의 수혜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2019년 말 방학이 시작되고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한 조치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오랜 기간 등원할 수 없는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받던 인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³⁴

E. 보건권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 2조 1항에 의거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의 최소 수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국에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상대적으로 의료인 수도 많지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가령 필수 구명 의약품, 실험실 소모품

²⁹ Troy Stangarone,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continues rapid decline”, *The Diplomat*, 2020년 5월 9일.

³⁰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권리의 대가(代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2019년 5월, 8-18쪽.

³¹ 해당 조사는 통일부의 의뢰로, 북한연구학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내용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요약본이 기자에게 배포됐다. 관련 기사는 다음을 참조. 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213000858.

³² *The Economist*, “North Korea is changing, but still dangerous”, 2020년 4월 8일.

³³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권리의 대가”, 16-18쪽.

³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학교는 1월부터 문을 닫은 상태이다. 모든 학교가 6월에 잠깐 문을 열었다가, 7월 방학을 기점으로 다시 문을 닫았다고 알려진다. 온라인 수업 등 교육 대안책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은 교육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및 진단품, 의료·치료·진단 장비, 핵심 및 긴급 의학적 개입에 필요한 물품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보조 기기 및 이동 기기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가 수도 부족하다. 외곽 지역 및 지방은 안전한 물, 안정적인 전기 및 난방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이는 전국 보건의로 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³⁵

34. 결과적으로 약 900 만 명의 핵심 보건의로 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이다.³⁶ 이는 특히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뿐 아니라 성 및 재생산 보건,³⁷ 아동 보건, 장애인 지원에 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평양은 그외 지역, 특히 지방 및 소외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다.³⁸ 또한 헌법 제 72 조는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지만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탈자로부터 수집한 진술에 따르면 입원, 수술, 의약품들을 포함하여 보건의로 치료 접근성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보건 부문에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대응하여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가령 전염병 학자, 의사, 간호사, 농업성 축산과 관계자로 구성된 235 개 기동팀을 꾸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건을 조사한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3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취약한 집단은 결핵 환자,³⁹ 장애인, 고아원이나 감옥을 포함한 기관 생활자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과거 구금 경험자에 따르면, 구금 시설 내 보건의로 시설 혹은 보건의로 전문가가 없고,⁴⁰ 예외없이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장소에 구금되며, 적절한 영양소를 갖춘 식사나 깨끗한 물을 제공하지 않는다.⁴¹ 이러한 시설 내 경비 담당자를 비롯한 직원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다(CAT/OP/10 참조). 다만 지난 6 월 백신을 전달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따른 이동 제한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면역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⁴²

F. 노동권

37. 국가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법령에 의거하여 국민은 국가가 배정한 일자리에 종사해야 한다.⁴³ 행정처벌법 제 90 조에 따르면 국가가 배정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3 개월 이하의 로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⁴⁴ 이러한 처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 6 조에 반하는 것으로,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³⁵ 인도지원조정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필요와 우선순위*, 42 쪽.

³⁶ 인도지원조정실, *글로벌 인도적 대응 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엔 공동 조치, 2020 년 4 월-12 월(2020 년 제네바)*.

³⁷ 출생 10 만건 당 산모 사망은 65.9 건으로 산모 사망률이 높다(인도지원조정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필요와 우선순위*, 24 쪽).

³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80 쪽.

³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세계에서 5 세 미만 아동 결핵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10 만명 가운데 80-120 명이 결핵으로 사망한다.

⁴⁰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 36 호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살피는 것을 포함하여 구금된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다 (CCPR/C/GC/36, 문단 25).

⁴¹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12-16, 26-27, 40-43, 45-49, 67-68, 73 쪽.

⁴² Ridwan Gustian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백신은 지속적으로 제공”, *유엔아동기금(2020 년 6 월 10 일)*.

⁴³ 여성은 결혼 이후 주부로 등록되어 국가 일자리 배정에서 면제를 받는데, 여성이 압도적인 비율로 민간 상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일부 이로부터 기인한다.

⁴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301-302 쪽.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⁴⁵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거나 증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노동 조합이 없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 8 조 1(a)항에 반하여 국가가 노동 조합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39.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탈자와의 면담에서 농업 및 건설 부문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여전히 강제 노동 동원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 이념을 확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목이다. 가령 학생 전원은 학기 중 농장이나 공장에서 반드시 노동을 해야 한다.

40.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형사 범죄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6개월 미만의 “로동교양”을 시킬 수 있다. 인민보안성을 포함한 국가 기관과 “지도위원회”가 해당 처벌을 내릴 수 있다(행정처벌법 제 17 조, 332-333 조, 335-337 조). 또한 미결구금 시설인 집결소에 있는 이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동원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8 조 3(b)항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형별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은 “권한있는 법원”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41.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구금됐던 이들과 진행한 면담에서 로동단련대, 집결소 및 교화소에 구금된⁴⁶ 남녀 수감자는 주로 건설 또는 농업 부문에서 강도 높은 육체 노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담대상자는 노동이 “고통”을 주려는 성격이⁴⁷ 있고, 소량으로 적절하지 않은 품질의 식사만 제공하고 신체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기계 없이 수행해야 하며 보호 장비가 제공되지 않고 부상을 입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며 노동에 대한 보상이나 사망을 포함하여 노동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더욱 심각하다고 진술했다.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들은 휴식도 취할 수 없다.⁴⁸

G. 국제 납치 및 가족 분리

42.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가족 분리 피해자가 만날 수 있는 상봉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상봉 행사가 2000년 처음 개최된 이래 대한민국 측 신청자 13만 3385명 가운데 2만 761명만 해당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상봉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더욱이 생존한 가족 분리 피해자 가운데 65퍼센트는⁴⁹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가족 분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⁵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족 및 친척이 거주하는 미주 한인 수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들도 가족 및 친척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⁵¹

⁴⁵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노동권 관련 일반논평 제 18호(2005)

참조(E/C.12/GC/18, 문단 6).

⁴⁶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한 일반적으로 정치범 수용소 내 강제 노동이 이뤄진다는 간접적인 목격자 진술을 받았다.

⁴⁷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만델라 규칙) 제 97 조는 교도 작업은 고통, 피로움, 또는 슬픔을 초래하는 등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⁴⁸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19-20, 48, 60-63 쪽. 통일연구원이 수집한 목격자 진술, *북한인권백서*, 74, 77 쪽.

⁴⁹ 대한민국 측 신청자 13만 3385명 가운데, 5만 1614명이 생존해있다.

⁵⁰ 대한민국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데이터(2020년 4월 30일 기준).

⁵¹ Paul Lee, “미주 한인 이산 가족” 동향, 전미북한위원회(2020년 4월).

43. 1970년대와 1980년대 납치된 일본 국적자 12명 생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44.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2020년 5월 15일 기준 총 316건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보내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실무그룹이 발족된 1980년 이래 단 한 건도 소명되지 않았다. 실무그룹 제 119차 회기에 34건, 120차 회기에는 7건이 제출됐다. 실무그룹은 제 119차 및 120차 회기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표준화된 답변만 보내는 것에 실망감을 표했다.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을 포함한 일부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들은 2020년 2월 13일 보도문을 발표했다. 1969년 12월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YS-11의 승객 및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지 50년이 된 날이다.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나머지 11명의 승객과 승무원뿐 아니라 여타 실종 건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진실되게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전과 같이 안보리가 해당 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⁵²

45. 한국전쟁 중 납치된 수만 명의 생사와⁵³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한 전후 납치 피해자 516명의 생사 확인은 전혀 진전이 없다. 유엔 특별절차 제도는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 중과 이후 납치된 이들 수백 명을 송환하여 수십 년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촉구했다.⁵⁴

IV. 해당국 내 인권 상황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유엔 간 협력

A. 유엔 정부간 국제기구 및 인권 조약체와의 협력

46. 인권이사회는 2019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상 제 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A/HRC/42/10). 해당국 정부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절차 중 나온 262개 권고 가운데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A/HRC/42/10/Add.1 참조). 이는 유엔 인권 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당국 내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역량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용하지 않은 권고는 특히 강제 성기 수색, 강간, 인신매매, 결혼 관계 내 강간, 구금 시설 내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등 특정 성폭력 문제 해결과 관련된 권고를 포함한다.

47.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주 제네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2019년 5월 열린 인권 워크숍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해당 워크숍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참여를 위해 파견된 대표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특별보고관과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인권이사회 결의 25/25에 따른 협력을 일체

⁵²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전문가, 50년 전 항공기 납치 때 납북된 11명을 송환하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촉구” (2020년 2월 13일).

⁵³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단의 아픔: 인권으로 접근한 한반도 비자발적 가족 분리” (2016년), 문단 12 및 46.

⁵⁴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전문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납치 피해자 송환 촉구” (2020년 6월 25일).

거부한다. 주제별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들은 국가 방문을 하지 못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의 방문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 3 차 정기보고서를 2009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제 3 차 정기보고서도 제출 기한인 2004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50. 유엔 총회 결의 74/166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 내에서 저지른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오랜 기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규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반인도범죄에 준하는 침해도 자행됐다. 또한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점도 규탄했다. 인권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 43/25를 통해 해당국 정부에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51. 안보리는 2020년 3월 30일 결의 2515 (2020)를 통해 안보리 결의 1874 (2009)에 의거하여 발족한 전문가 패널 위임권한을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전문가 패널은 결의 1718 (2006)에 의거하여 설립된 안보리 위원회를 지원한다. 해당 결의안은 유엔 헌장 제 7장에 따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B.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

52.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인권이사회 결의 25/25에 의거하여 모니터링, 기록, 역량 강화, 지평 확대 노력을 이어왔다. 정부, 시민사회단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유엔 기관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활동가뿐 아니라 여타 이해당사자와 협력했다.

53. 관련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9년 10월 일본에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 피해자, 일본 당국 관계자 및 사법 전문가와 만났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설립 이후 2020년 7월 기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피해자 400명 이상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7월 28일 발간했다.

54.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19년 11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한반도 내 평화 증진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한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55. 인권최고대표는 2020년 3월 10일 인권이사회 결의 40/20에 의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구두로 발표했다. 인권 모니터링 및 기록 강화와 정보 및 증거 저장소(repository) 구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건에 대한 향후 책임 규명 전략 모색에 있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행한 일을 공유했다. 인권이사회와 회원국으로 하여금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가능한 책임 규명 전략을 지원하고, 해당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관과의 협력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관은 여전히 데이터 및 정보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인도적 필요를 파악하고 최취약층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국가 경제 발전 5 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국가 예산 배정 정보를 공개한다면 인도주의 기관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젠더, 연령, 장애 여부,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및 차별 정도를 파악하고, 국제 인권 의무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유엔의 인도적 활동을 위한 기금은 2019 년 목표액에 비해 72 퍼센트 부족한 총 3200 만 달러가 모금됐다.

58. 제재 조치로 인한 은행 거래 불가로 인도적 지원 전달이 여전히 어렵다. 현금 흐름 제한으로 인한 영향으로, 차량 연료 조달이 어려워 모니터링 및 이행 목적으로 한 현장 답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다고 파악됐다.

59.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성과 모니터링 환경이 최근 몇 년간 개선되긴 했으나, 아직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프로그램 구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하거나 수혜자와 논의를 할 수 없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을 막고자 취한 조치 때문에 2020년에는 제한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시 전 지역에 제한없이 인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권고를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A/HRC/42/10, 권고 126.56, 126.58 및 126.59).

60. 안보리 결의 1718 (2006)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는 2019 년 제재 면제 요청을 근무일 기준 5 일 내지 15 일 이내에 처리했다. 차량이나 구급차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물품은 제재 면제 처리 기간이 길어질 때도 있었다. 해당 안보리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관련된 장비 조달을 위한 제재 면제 요청은 3 일 이내에 처리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로 물품을 전달하는 인도적 지원 유통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인도주의 기관 요청에 따라,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경우 1 년 간 유효한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지기도 했다. 제재 면제가 평균적으로 반년 간 유효한데, 인도주의 단체는 제재 면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반년이라는 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유엔 상주조정실은 제재 면제 신청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인도적 활동을 하는 소규모 비정부 단체에게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가령 신청 시 필요한 법적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A/HRC/43/58, 문단 9-13 참조).

V. 결론

61.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까다로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사무총장은 한반도 내 평화와 안보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재개하도록 촉구한다. 사무총장은 외교 의제에 인권을 좀 더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구금자 대우, 여성 구금자가 직면하는 인권 침해, 정치범 석방, 인도적 활동가 및 인권 활동가 접근성 확대, 인도적 상황 및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62. 사무총장은 회원국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 전파되는 가운데 여러 국제 인권 의무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한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의 국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상당한 여파를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식량권과 보건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 중국과의 육로 국경 폐쇄와 국내 이동의 자유 제한이 더욱 강화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기초적인 상행위에 참여하는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처 전략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심각한 제한 조치는 취약 계층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일을 사실상 중단하게 만든다.

63. 사무총장은 이동과 표현의 자유, 노동권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체포하여 구금하는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양상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강제 송환된 이들을 포함하여 여전히 구금된 이들이 처한 환경과 처우에 우려를 표한다. 회원국을 비롯한 여타 이해관계자가 조사위원회 결과 후속 조치를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환영한다. 후속 조치는 반인도범죄에 준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 국제 형사법을 근거로 책임을 묻고자하는 노력도 포함한다.

64. 사무총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한 점을 환영하며, 해당국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하여 일부 인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판단한다. 이러한 협력이 이어지길 독려하며, 아울러 유엔 제도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VI. 권고⁵⁵

65. 사무총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a) 국제 관습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준한 5 개 핵심 인권 조약을 포함하여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한다. 또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그 의정서를 비준한다.

(b)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와 인권 조약체가 제시한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조약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제 3 차 정기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기한을 넘긴 보고서를 제출한다.

(c)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포함하여 유엔 인권 제도와의 유의미한 협력을 위해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프로그램 부문에서 취한 초기 조치를 이어간다.

(d)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

(e) 특별보고관과 유의미한 협력을 시작한다. 특별보고관 권고를 이행하고, 국가 방문이 가능하도록 초청하고, 여타 주제별 특별보고관 국가 방문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f) 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증진을 위한 인권최고대표 보고서에 포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이 파악한 내용과 권고를 다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HRC/40/36);

(g) 정치범을 전원 석방하고, 적용가능한 국제 인권법에 의거하여 자의적 구금 건을 즉각 해결하며, 재판 절차가 예외없이 국제 표준을 따를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한다.

⁵⁵ 앞선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h)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치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특히 식량, 물, 위생, 보건 및 교육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기본적인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며, 이러한 조치가 특히 취약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i) 구금 시설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될 위험성이 가장 큰 개인을 긴급하게 파악하며, 이 때 특히 취약 집단을 고려한다. 또한 여러 구금 시설 내 구금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며,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조기 석방, 미결수 석방 또는 임시 석방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j) 국제 협력을 통한 조치를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 따른 식량, 물, 위생 및 보건 관련 최소 핵심 의무를 차별없이 이행한다.

(k) 일본, 대한민국 및 기타 국가에서 납치된 이들이 겪은 일과 생사에 관해 납치로 인해 영향을 받은 피해자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준으로 소명한다.

(l) 대한민국과 협력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가족 분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남북 양측 가족이 연락을 지속하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영구적인 제도(mechanism)을 마련한다. 이 때 가족 간 만남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 분리 피해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m) 유엔 기관과 인도주의 단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전역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데이터 접근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과 단체가 적절하고 독립적으로 필요(needs)를 평가하고 대응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66. 사무총장은 국제공동체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권이사회 결의 25/25, 28/22, 31/18, 34/24, 37/28, 40/20 와 총회 결의 69/188, 70/172, 71/202, 72/188, 73/180 에 의거하여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고려한다.

(b)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고려한다. 이 때 이사회 결의 34/24, 37/28, 40/20 에 의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c) 비법적으로 외국으로 국경을 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보호한다. 이 때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필요와 경험을 고려한다. 또한 이들이 반드시 보호를 받고 송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d)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과 의약품 제공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자금을 꾸준히 제공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적 환경과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용되는 제재 조치가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인도적 지원 관련을 포함하여 조치를 취한다. 이 때 경제 제재 조치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간 관계를 다루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 8 호(1997)를 고려한다(E/C.12/1997/8).